

##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

법 제 2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감시대상	집합투자업자명	키움투자자산운용
	집합투자기구명	키움 코리아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[금감원펀드코드:0010182C1207]
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·행위의 법령등 위반내용		법제 81 조(자산운용의 제한)제 1 항제 3 호마목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[집합투자증권]키움자자손손백년투자증권자 1 호 A-e 투자비율 29.18%(2019.11.5)
신탁업자 조치사항	철회요구사항	-
	변경요구사항	-
	시정요구사항	법제 81 조제 1 항제 3 호마목 투자비율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
요구일자 및 이행일자	신탁업자 요구일자	2019년 11월 7일
	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	2019년 11월 12일 현재 미이행 (21.68%)
기타사항		-